

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4. 07 ----- 사하구
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8. 04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8. 04. 22 (제1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청소행정과장 김한돈)

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중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대상을 완화하여 편의를 높이하고자 함

3. 관련법령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

4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

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
나. 감량의무사업장 면적을 165제곱미터 이상에서

6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류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감량화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
-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중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대상을 사업장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에서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맞춤형 봉사행정 확보와 주민의 편익제고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되고
- 영도구를 비롯하여 남구, 수영구 등 3개구에서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여타 구·군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
- 특히 부산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지침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감량의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일부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없 음

8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